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2016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1576
----------	------

2016년 12월 19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12. 16. 김종욱 의원 외 78명

나. 회부일자 : 2016. 12. 16.

다. 상정 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욱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회는 지난 12월 9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탄핵소추의결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66%)를 훨씬 넘은 234명(78%)이 찬성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함.
- 같은 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주 연속 평균 91% 이상을 차지하고, 국민의 81%가 암도적으로 피청구인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전면적으로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남.
-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로 인한 헌정질서의 역행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인용을 통한 파면을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대한민국헌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지난 12월 9일, 제346회 제18차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이후,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헌법 질서 수호,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도록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임.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판단 하에 제346회 제18차 국회 본회의(2016.12.9.)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음.
- 이후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중지되고,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38조),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법」 제23조), 그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음.

<그림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탄핵사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제67조제1항), 법치 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제66조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 제도(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제78조), 평등원칙(제11조), 재산권 보장(제23조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제119조제1항), 언론의 자유(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함.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 사실이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 이뤄지는 한편,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각종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심리가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과 그 주변인(이하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 의혹,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비롯한 전직 고위관료의 비리 연루 의혹,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2016.12.11.)에 따르면,
-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 안종범(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 정호성(전 부속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전 경제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불기소 기소됐음.
- 검찰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현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바 있음.
- 이에 본 결의안은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안종범·정호성·김종·조원동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사실상 ‘공범’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와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회 국정조사¹⁾와 특별검사²⁾의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인용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함으로써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6.11.17.)해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 중임.

2)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2016.11.23.)되어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

3 종합 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불안한 국정운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등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국정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 등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것이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국정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2016현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

헌법은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참담한 현실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등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자행된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 그 자체였다.

특히,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분노와 혀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은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말하였듯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고, 대통령을 믿었던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헌법수호자이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여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국정을 농단한 일대 사건으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지난 12월 9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탄핵소추의결에 필요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66%)를 훨씬 넘은 234명(78%)이 찬성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날 한국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주 연속 평균 91% 이상을 차지하고, 국민의 81%가 압도적으로 피청구인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

민들의 신임을 잃었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전면적으로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로써,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이라 할지라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인용을 통한 조속한 파면결정이야말로 오히려 국가적 손실과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길이며,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로 인한 헌정질서의 역행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인용을 통한 파면을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모든 국민과 천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2. 1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